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은 지금까지 성주군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물원 관람을 무료로 운영하여 왔으나

나. 최근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많은 등반객과 관람객이 찾고 있고 2006년 개원후 현재까지 성주군과 가야산의 홍보와 자생식물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식물원으로써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므로 식물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식물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입장권은 일반,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의 개인입장권과 단체 입장권으로 각각 구분 한다.

나. 입장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 식물원 입장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식물원 관리와 관람에 방해를 하는 자 및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서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

○ 음주, 흡연 등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식물을 채집하거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물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라.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매점, 기념품 판매점 등 관람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관련법령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은 2006년 개원 후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성주군과 가야산의 홍보와 자생식물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식물원으로써의 기초적인 면모를 갖추었고

○ 최근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많은 등반객과 관람객이 찾고 있어 본 식물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을 유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률과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